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7. 13 선고 2020가단32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최용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1.

판 결 선 고 2021. 7. 1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20. 4. 2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0. 5. 4. 접수 제7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 - 나.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0. 5. 6. 접수 제10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1/3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20. 4. 2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0. 5. 4. 접수 제7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0. 5. 6. 접수 제10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원고는 금융기관의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받은 다음,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1542호로 양수금 5,568,008원 및 이에 대한 2003. 10. 25.부터 2008. 5. 31.까지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18. 3. 19. C에게 송달되어, 2018. 4. 3.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

1)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던 망 D가 2019. 11. 6. 사망하였고, 상속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망 D의 상속관계			망 E의 상속관계(대습상속)		
관계	성명	상속지분	관계	성명	상속지분
배우자	망 F(2020. 6. 18. 사망)	3/9	배우자	피고	6/63

자녀	망 E(2012. 12. 31. 사망)	2/9	자녀	G	4/63
자녀	H	2/9	자녀	I	4/63
자녀	C	2/9			
합계		1			2/9

2) F, H, C, 피고, G, I은 2020. 4. 28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는데, 그 당시 C은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, 건강보험금을 체납하거나 각종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.

3) 피고는 2020. 5. 4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7708호로, 2020. 5. 6.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098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(2/11)을 포기하고,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,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모든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E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살았고, C의 재산관계나 부채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20. 4. 2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,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0. 5. 4. 접수 제7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0. 5. 6. 접수 제10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한편 원고는, 망 D의 상속인들로 H, C과 대습상속인으로 망 E의 배우자인 피고, 자녀 G, I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C의 상속지분 1/3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망 D의 배우자인 망 F이 생존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상속지분은 2/9 지분이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차진석

별지

목 록

1. 경남 고성군 J 전 747㎡
2. 사천시 K 전 53㎡
3. 사천시 L 전 192㎡
4. 사천시 M 전 532㎡ 끝.

